

『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예
따라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
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이때, 일정기간을 규정하여 연례적·반복적인 출자·출연
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
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12조에서 서울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도록
규정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